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해사항만청과 그 권한

항만 내 벙커링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PA)이 규제합니다. MPA는 1996년 2월 2일 싱가포르 해사항만청법(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96)에 따라 해양국(Marine Department), 국가해사위원회(National Maritime Board), 그리고 옛 싱가포르항만청(Port of Singapore Authority)의 규제 부서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1] 상업 터미널은 법인 운영사가 된 PSA로 넘어갔고, MPA는 항만당국, 규제기관, 국제 해사 중심지로서 싱가포르를 진흥하는 기관의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규제와 터미널 운영의 분리는 MPA에 라이선스 당국에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했습니다.

MPA는 실물 공급 사슬의 모든 참가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자체 인도 서류로 항만에서 벙커를 공급하는 회사는 벙커 공급업체(Bunker Supplier)로서 벙커링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를 수행하는 유조선에 대해 벙커선 운영자(Bunker Craft Operator)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2] 유조선 자체는 항만선박으로서 일반적인 항만선박 라이선스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벙커 검정회사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적 근거는 MPA법과 그에 따른 규정으로, 이들은 라이선스 없이 항만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MPA가 부여하는 라이선스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3] 벙커링을 규율하는 세부 의무는 법률보다 라이선스 조건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신청인은 최소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갱신할 때마다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4] 저장시설, 3년간의 판매 전망, 벙커 유조선 투자, 연료 조달원, 다른 항구에서의 실적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주주와 이사의 프로필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내에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은, 완전 전기식이거나 B100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 있거나 수소 같은 넷제로 연료와 호환되는 신규 벙커 유조선을 최소 2척 소유·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

이러한 요건 때문에 라이선스 보유자의 수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기준 MPA의 재래식 연료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 보유자 명단에는 39곳이 올라 있었습니다.[6] 여기에는 석유 메이저, 중국·인도네시아·한국·일본 에너지 그룹의 트레이딩 부문, 글로벌 트레이딩 하우스의 벙커 자회사, 그리고 몇 척의 유조선 운영자로 출발한 가족기업을 포함한 싱가포르 독립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라이선스에는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연간 5,000만 톤이 넘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만, 조건을 한 번 중대하게 위반하면 잃을 수 있습니다.

인증, 품질경영, 점수제

라이선스를 받은 공급업체는 또한 벙커 공급 사슬에 대한 인증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싱가포르 표준 SS 524:2021에 기반하며, 싱가포르 인정위원회(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가 인정한 기관의 인증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라이선스 만료 전에 감사보고서를 MPA에 제출해야 합니다.[7] 이 표준은 공급업체가 연료의 구매와 저장에서부터 유조선 적재와 선박 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슬 전체를 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MPA는 점수제를 통해 성과를 감독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라이선스 승인 시와 갱신 시마다 세 가지 성과지표에서 각각 100점으로 시작합니다. 인증을 유지하려면 가중 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중치가 70%로 가장 높은 지표는 벙커 공급 기록과 벙커링 절차 및 질량유량계 계량에 관한 표준의 준수를 다룹니다. 중대한 미준수 1건마다 40점, 중간 정도의 미준수 1건마다 20점이 감점됩니다. 나머지 두 지표는 충돌과 오염을 포함한 선박 운항,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다룹니다. 공급업체는 매 인도마다 수령 선박으로부터 고객 피드백을 받아 MPA의 DigitalPORT@SG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8] 이 제도는 각 인도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만들며, 이를 통해 MPA는 단 한 건의 사고가 스캔들로 번지기 전에 성과가 악화되는 공급업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벙커 유조선, 운영자, 검정인

벙커 유조선단은 시장의 물리적 기반시설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갱신된 MPA의 벙커 유조선 목록에는 질량유량계를 장착한 유조선 222척과 용적식 유량계를 사용하는 소형 유조선 4척이 올라 있었습니다.[9] 크기는 재화중량 약 100톤의 소형선에서 거의 1만 톤에 이르는 유조선까지 다양합니다. MPA는 라이선스 제도를 활용하여 선단을 교체해 왔습니다. 게이트 제도(gate system)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재화중량 600톤 이상의 벙커 유조선은 선령 10년 미만이어야 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선령 30년 이상의 유조선이 항만에서 운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10] 항계 내 벙커 유조선, 메탄올 벙커 유조선, LNG 벙커선에는 별도의 MPA 표준이 적용됩니다.

벙커 검정인이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구매자가, 때로는 매도인도 함께 선임한 검정인은 인도에 입회하여 인도 전후 벙커 유조선의 탱크를 점검하고, 유량계 판독과 시료 채취를 참관하며, 불일치가 있으면 보고합니다. 검정인의 독립성은 중요합니다. 공급업체와 결탁한 검정인은 제도가 의존하는 통제 장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검정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 MPA의 결정은 이들을 규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Grandeur Trading and Services 사건은 그보다 15년 전에 이미 검정인과 공급업체 간 결탁 위험이 실재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지와 취소

MPA의 최종 제재인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는 정기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 9월 MPA는 한 벙커 검정인이 Grandeur Trading and Services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 회사의 라이선스를 정지했고, 회사는 이후 라이선스를 반납했습니다.[11] 같은 회사가 2026년 라이선스 공급업체 명단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는 라이선스 상실이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2019년 5월 MPA는 Southernpec (Singapore)의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를 취소했습니다. 단속 점검 결과 직원들이 벙커링 작업 중 자석을 사용하여 질량유량계에 간섭했고, 화물 담당 사관들이 벙커링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12]

도산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MPA는 벙커링 부정행위를 이유로 Inter-Pacific Petroleum의 벙커선 운영자 라이선스를 취소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Inter-Pacific이 사법관리에 들어가 더 이상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공급업체 라이선스도 취소했습니다.[13] 2020년 10월 MPA는 Hin Leong의 벙커링 부문인 Ocean Bunkering Services의 라이선스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물량 기준 싱가포르 3위의 벙커 공급업체로, 추정 판매량 300만~400만 톤에 벙커 유조선 14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회수하자 2020년 4월 인도를 중단했습니다.[14] 제H편 제II장에서 살펴보는 Hin Leong의 붕괴는 이렇게 몇 주 만에 최대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시장은 혼란 없이 이 손실을 흡수했으며, 이는 시장의 깊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 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Wikipedi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96년 2월 2일 MPA Act 1996에 따라 해양국, 국가해사위원회, 옛 싱가포르항만청의 규제 부서를 통합하여 설립됨. ↩
2. MPA, “Bunkering Licence Application Guidelines” (mp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사 자체 인도 서류를 사용하여 싱가포르항에서 벙커를 공급하려면 유효한 벙커링 라이선스(벙커 공급업체)가 필요함. 신청인은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와 벙커선 운영자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할 것을 약속해야 함. 벙커 유조선은 항만선박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음. 벙커 검정회사 라이선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3.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ct 1996 (2020 Revised Edition), 항만 서비스 및 시설의 라이선스에 관한 조항, 그리고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Port) Regulations. ↩
4. MPA, “Bunkering Licence Application Guidelines” (위 주): 최소 납입자본금 50만 싱가포르달러, 갱신 시 유지해야 함.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됨. ↩
5. MPA, “Bunkering Licence Application Guidelines” (위 주): 사업계획서 요건. 싱가포르 내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청인은 완전 전기식이거나 B100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 있거나 수소 같은 넷제로 연료와 호환되는 신규 벙커 유조선을 최소 2척 소유·운영해야 함. ↩
6. MPA, “List of licensed bunker suppliers in the Port of Singapore”, 2026년 9월 4일 기준(PDF, mp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라이선스 공급업체 39곳. 그 가운데 BP, Chevron, ExxonMobil, Glencore, PetroChina, Shell, Sinopec, TotalEnergies, Vitol Bunkers 및 싱가포르 독립 공급업체들이 있음. Global Energy Trading, Golden Island, PetroChina는 재래식 연료 외에 메탄올 공급업체로도 등재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MPA, “Bunkering Licence Application Guidelines” (위 주): SS 524:2021에 기반하고 싱가포르 인정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한 벙커 공급 사슬 품질경영시스템(QMBS). 라이선스 만료 전 연례 감사보고서 제출. ↩
8. MPA, “Bunkering Licence Application Guidelines” (위 주): 승인 및 갱신 시 KPI당 100점의 KPI 점수제. 최소 가중 합계 점수 75점. 벙커 공급 기록(SS 600 및 SS 648 준수)의 가중치 70%, 중대한 미준수 1건당 40점, 중간 정도의 미준수 1건당 20점 감점. 선박 운항 기록과 고객 피드백 기록은 각각 15%. 모든 벙커링 작업에 대한 고객 피드백은 1점에서 5점으로 평가되어 DigitalPORT@SG를 통해 입력됨. ↩
9. MPA, “Bunker Tanker List”, 2026년 10월 16일 갱신(PDF, mp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갖춘 벙커 유조선 222척이 재화중량(99~9,948 DWT)과 승인 연료와 함께 기재됨. 용적식 유량계를 사용하는 104~127 DWT의 벙커 유조선 4척. ↩
10. MPA, “Bunkering Standards” (mpa.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게이트 제도에 관한 부분: 2012년 1월 1일부터 600 DWT 이상 벙커 유조선은 선령 10년 미만이어야 함. 2014년 1월 1일부터 선령 30년 이상 벙커 유조선은 항만 내 운항 불가. ↩
11. MPA, “MPA Suspends Licenses of Grandeur Trading and Services Pte Ltd” (보도자료, 2002년 9월 11일): 검정인 1명이 Grandeur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002년 9월 10일부터 정지. Grandeur는 벙커링 라이선스를 반납함. MPA, “List of licensed bunker suppliers”, 2026년 9월 4일(위 주): Grandeur Trading & Services Pte Ltd가 라이선스 벙커 공급업체로 등재됨. ↩
12. 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Revokes Southernpec (Singapore) Pte Ltd’s Bunker Supplier Licence” (보도자료, 2019년 5월 29일): 2019년 5월 29일부로 취소. 직원들이 “magnets to interfere with the mass flow meter during bunkering operations”를 사용함. 화물 담당 사관들이 “did not record the information in the bunkering documents accurately”.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3. 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Revokes Inter-Pacific Petroleum Pte Ltd’s Bunker Supplier Licence” (보도자료, 2019년 12월 9일): 벙커링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9년 10월 15일 벙커선 운영자 라이선스 취소. 사법관리인 선임 후 회사가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9일부로 벙커 공급업체 라이선스 취소. ↩

14. gCaptain (Reuters), “Singapore suspends bunker supply licences of Hin Leong unit”, 2020년 10월 19일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BS는 2019년 물량 기준 3위의 벙커 공급업체로, 추정 300만~400만 톤과 라이선스 벙커 바지선 14척을 보유함. 2020년 4월 영업을 중단했으며 “has not been able to fulfil its licensing commitment to date”. Hin Leong이 채권자들에게 진 채무는 38억 5,000만 미국달러.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